

건축행정 상담

□ 건축법

- 문 신림동에 사는 주민입니다. 1층 주택에다 2층 중축을 하려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더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(일조권 저촉). 2층으로 증축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?
답 현행법에는 기존건축물이 일조권 등에 저촉되면 그 건물에 대하여는 증축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귀하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일조권 저촉 부분을 시정하시면 2층 증축이 가능합니다.
- 문 주거지역내 보링장을 건립하려고 합니다. 가능 한지요?
답 건축법 시행령 부표에 용도분류에도 누락이 되었고 유기장법에도 누락이 되었습니다. 그러므로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.
- 문 지상 1.0미터 높이 위에 조경을 설치하려고 합니다. 옥상조경에 해당 됩니까?
답 지상 1.0미터의 높이의 조경은 지상조경에 해당됩니다.
- 문 대지면적에 45° 주차하고 남은 삼각형 대지에 교목을 식재 하려고 합니다. 조경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읍니까?
답 네,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.
- 문 아파트 지구내 기존 건축물(지구지정 이전)의 용도 변경은 건축법에 따라 처리가능 한지요?
답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용도 변경 가능합니다.
- 문 낙하물방지 보도철망은 건축물 높이 몇미터 이상에 설치하여야 합니까?
답 높이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둘출길이 3미터 이상, 15° 각도로 보도철망을 설치하고 수평거리 5미터 이내이고 높이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보도철망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
- 문 20미터 도로 상호간에 접한 대지입니다. 일조권 규정을 적용합니까?
답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규정에 의해 일조권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문 업무시설인 11,000제곱미터 중에 일부가 (200제곱미터) 대중음식점인 경우 용도변경 절차없이 당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?
답 당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를 상세히 파악해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오니 가옥대장을 가지시고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문 주거지역 안에서 슈퍼마켓 건축이 가능합니까?
답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규모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불가합니다.
- 문 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관광숙박 시설이란 어떤 것입니까?
답 첫째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200세대 이상의 기준주택이 위치하지 않고
둘째 : 대지는 폭 12미터 이상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하고
세째 : 건폐율은 40%를 넘지 않고
네째 : 조경면적은 20%이상 주거환경에 저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
- 문 건축물에 붙여서 폭 1미터의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에 포함시켜야 합니까?
답 연면적에는 산정되지 않으나 건축면적에는 산정되어야 합니다.
- 문 연면적이 5,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대지주위에 3미터 이상 통로를 설치토록 되어있는데 이 통로상에 조경을 하는 경우 조경면적에 산정할 수 있읍니까?
답 소화상 필요한 통로가 아닌 경우 조경할 수 있습니다.
- 문 상업지역내에서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선에서 몇 미터를 후퇴 배치하여야 합니까?
답 6미터 이상 후퇴 배치하여야 합니다.
- 문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에 위반되는 경우 증축할 수 있읍니까?
답 증축하는 부분이 현행 건폐율에 맞게 수직 증축가능합니다.
- 문 주거지역내 학원용도로 전축 가능합니까?
답 주거지역내에는 사설강습소로 건축이 불가능합니다. 사설강습소는 사설강습법에 규정된 용도전체를 포함합니다.
- 문 기존건축물의 공지내에 자동차주차를 위한 가건물을 건축코자 합니다. 이 경우 기존건축물을 포함한 건폐율에 맞아야 합니까?
답 가설 건축물로 건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특별한 경우(공장내 제품, 액적장 등)에도 건폐율에는 산정하여야 합니다.
- 문 5층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에서 건물은 몇미터를 띄워서 건축하여야 합니까?
답 6미터 이상 띄워야 합니다.
- 문 본인이 상가건물을 짓고자 하나 피난계단이 대지의 모퉁이에 위치하게 됩니다. 가능합니까?
답 피난계단의 출입구로부터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 또는 도로에 통하도록 3미터 이상의 통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.
- 문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로서 대지 면적이 모자라는 데 건축이 가능한지요.
답 건축법에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된 땅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완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. 다만 구획정리

사업이 82. 7. 1. 이전에 완료된 땅에 한해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
- ▣ 철마 높이가 7.5미터인 박공지붕의 경우(최고높이 10미터) 철마 높이에서의 일조권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요?

▣ 일조권은 그 기준을 건축물의 높이로 산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건축물의 높이는 10미터로서 철마 높이가 8미터미만이라 하더라도 각 부분으로부터 즉 7.5미터의 1/2을 띠워서 건축하셔야 합니다.

- ▣ 준주거 지역의 일조권 적용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요?

▣ 일조권 적용은 주거전용지역 또는 주거지역안에 건축물과 공동주택, 기숙사의 경우에만 적용합니다.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92조제 2 항 규정에 의한 공지확보를 하시면 됩니다.

- ▣ 도시계획에 저축된 대지내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요. 이 경우 규모제한은 어느정도 입니까?

▣ 건축법 제47조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 또는 예정지내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. 그 규모는 주요 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,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아니어야 하고 층수는 3층이하이며 대지조건은 전기, 가스, 수도 등의 새로운 간선공급 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는 것이면 됩니다.

- ▣ 주거전용 지역에서 점포(근린생활시설)와 점포간의 상호거리는 얼마인가요?

▣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거리는 없읍니다.

- ▣ 준공업지역에서 창고건축이 가능한지요? 면적 제한은?

▣ 가능합니다. 면적제한은 없읍니다.

- ▣ 6층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연탄보이라실을 하여도 되는지요?

▣ 6층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난방을 보이라로 할 수 없읍니다.

- ▣ 지목이 도로인 사유지에 건축이 가능한지요?

▣ 지목이 도로라면 사도라 할지라도 건축이 불가합니다.

- ▣ 아파트지구 내 유치원 부지인데 교회를 지을수 있는지요?

▣ 아파트 지구내의 건축물은 아파트 지구 기본 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교회건축이 불가합니다.

- ▣ 준주거 지역내 옥상조경은 얼마까지 기준조경 면적에 산정할 수 있읍니까?

▣ 지상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면적의 1/2까지만 기준조경 면적에 산입할 수 있읍니다.

- ▣ 자연녹지 지역내에서 연립주택 건축이 가능합니까?

▣ 예, 가능합니다.

- ▣ 준주거 지역내 옥상조경은 얼마까지 기준조경 면적에 산정 할 수 있읍니까?

▣ 지상에 설치하는 조경면적의 1/2까지만 기준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읍니다.

- ▣ 기존건물이 공장 및 사무실인 경우 후생복리 시설로 증축이 가능합니까?

▣ 예, 가능합니다.

- ▣ 일반적으로 노선상업지역의 지정폭은 얼마입니까?

▣ 일반적인 지정폭은 12미터 입니다.

- ▣ 대지 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. 건축 준공후에도 가능합니까?

▣ 건축법 시행령 제92조제 2 항에 의하면 담장은 대지 경계선에 설치가 가능하며 높이 2 미터 미만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.

- ▣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역지구는 어떻게 합니까?

▣ 대지가 과반이 속하는 지역, 지구의 규정을 적용합니다. 다만, 대지가 떠 모양으로 지정된 미관 지구 상업지역 또는 고도지구는 예외가 됩니다.

- ▣ 2개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범위는?

▣ 건축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로서 도로반대편 까지 거리의 2 배 이내 부분은 가장 넓은 도로측의 사선 제한을 받습니다.

- ▣ 주거지역내 주택을 지을 경우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최외단 까지는 얼마를 띠워야 합니까?

▣ 20센티미터 이상 띠어서 건축하셔야 합니다.

- ▣ 여관은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읍니까?

▣ 주거용 건물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므로 여관은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읍니다.

- ▣ 바닥면적 산정에 있어 건물내부에 있는 수직 닉트는 바닥면적에 제외하여 용적율에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까?

▣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제 1 항제 3 호 라목에 의하면 배관핏트 및 닉트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경우는 옥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며 옥내의 수직 닉트는 바닥면적에 산정해야 합니다.

- ▣ 전면도로가 2개 이상으로 서로 대지의 지표면과 고저차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각각 도로에서 어떻게 산정합니까?

▣ 각각 도로에서 건축물이 면하는 부분도로의 평균도로면에서 높이 제한 적용을 해야합니다.

- ▣ 동일 건축물 내에서 판매시설 사무소 용도의 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 연면적이 1,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선에서 4미터를 후퇴 배치하여야 합니까?

▣ 판매시설, 숙박시설,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1,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선에서 4 미터 후퇴 배치하여야 합니다.

- ▣ 주거지역내 각종 학원용도의 건축이 가능합니까?

▣ 사설 강습소는 건축이 불가합니다.

- ▣ 주거지역안에서 단일 용도로 대중음식점은 1,000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건축하고자 합니다. 가능합니까?

▣ 대지가 6미터 이상도로에 6미터이상 접하거나 또는 4미터 이상을 두곳에 접한 대지이면 건축 가능합니다.

- ▣ 주거지역내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얼마나 띄어야 합니까?

답) 일조권 적용을 받는 정북방향이 아닌 경우 외벽에서 50센티미터를 띄어야 합니다.
- ▣ 한 필지의 대지내 점포와 주택을 2동으로 건축할 때 점포와 주택의 사이 거리는 얼마나 띄어야 합니까?

답) 어느 건물이 한 건물의 부속건물이 아닌 경우 각 건물의 높이만큼 띄어야 합니다.
- ▣ 기존 건축물이 일조권 규정에 저촉되면 용도 변경을 할 수 없습니까?

답) 건축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 의하면 용도 변경을 포함한 건축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.
- ▣ 건축물 연면적이 1,200제곱미터이 조경면적은 얼마를 해야 합니까?

답) 대지면적의 15% 이상을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옥상에 설치하는 면적은 상업지역 내에서는 지상조경면적의 1/2까지만 해당면적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.
- ▣ 건물을 신축하면서 창문을 낼 때 꼭 차면시설을 해야 합니까?

답) 대지 경계선에서 2미터 이내에 창을 설치할 때에는 차면시설을 해야 합니다.
- ▣ 25.0미터 도로변에 극장을 설계하려 합니다. 대로변에 접한 대지인데도 시행령 제67조 2항에 의한 1/5 이상을 도로면에 접하여야 합니까?

답) 판매시설, 관람시설은 대지둘레의 1/5이상을 소정의 도로폭 및 면에 접하여야 합니다.
- ▣ 준주거지역인데 판매시설 및 위락시설이 가능 한지요?

답) 판매시설은 가능하나 위락시설은 불가합니다.
- ▣ 상주공사감리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얼마입니까?

답) 연속된 5개층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이 3,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.
- ▣ 상업지역내에서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조건은?

답) 대지둘레의 1/2이상이 도로에 접하고 건축물이 모든 건축선에서 각각 6미터이상 후퇴 배치하는 경우입니다.
- ▣ 동일 건축물로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?

답)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해 건축 불가합니다.
- ▣ 5층인 건축물로 사무실인 경우 한층의 바닥면적이 몇제곱미터인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까?

답)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소 설치해야 합니다.
- ▣ 적법 2층 건축물에 3층을 증축하려 하는데 가능 한지요?

답) 일조권에 적합하여야 가능 합니다.
- ▣ 상업지역으로 높이 16미터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얼마를 띠어야 합니까?

답) 12미터가 넘는 건물은 건물 높이에서 12미터를 뺀 1/40에 0.5미터를 더한 거리를 띠어야 합니다. 0.6미터를 띠우면 됩니다.
- ▣ 기존 건축물이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직증축이 가능합니까?

답) 기존건축물이 준공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 수직증축이 가능합니다.
- ▣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동일건축물내 복합 용도로 건축이 가능합니까?

답) 공동주택내에는 지하실에 설치하는 대피소, 주차장, 관리사무소 이외에는 복합용도의 건축물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.
- ▣ 아파트의 발코니 부분을 전면면적 및 바닥 면적에 산정해야 합니까?

답) 발코니가 면한 부분(옥내면을 제외) 수직면의 면적의 1/2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발코니 끝에서 1미터를 제외한 부분을 신입하여야 하며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▣ 건축허가시 1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때 건축 허가 취소를 하여야 하는 규정을 알려 주십시오.

답) 건축법 제 4조제 1항제 4호와 건축법 시행령 제94조를 참고하십시오.
- ▣ 대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권 산정에 있어서 높이는 어떻게 산정합니까?

답) 대지의 고저차가 있는 부분의 1/2위치에서 당해 건축물 높이를 가산하여 높이로 합니다.
- ▣ 한 필지의 대지내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중복 지정된 경우 당해 대지에 적용하는 지역은?

답) 당해 대지의 과반 이상에 속하는 지역에 대한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.
- ▣ 대지의 전면도로 반대측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용적은?

답) 건축선에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측까지의 거리에 따라 높이 제한을 적용하면 됩니다.
- ▣ 11층의 아파트 건축시 지하층은 얼마나 확보 하면 됩니까?

답) 각층의 평면 바닥면적 만큼만 설치하면 됩니다.
- ▣ 준공업 지역내 공동주택인 아파트 건축이 가능 합니까?

답) 예, 가능합니다.
- ▣ 주거지역내 관광호텔을 건축하는 경우 조경면적은 얼마를 해야 합니까?

답) 건설부공고 제79호(82. 10. 14)에 의하면 대지 면적의 20%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- ▣ 가사용 승인을 득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.

답) 특별히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나 가사용 승인 당시 공사가 미완료 부분 공사 완료 예정 기간을 가사용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.
- ▣ 지하 3층에 직통계단을 설치시 지하 3층에서 지하 1층까지 올라와서 1층에 이르는 직통계단과 연결하

는 경우 직통계단으로 인정됩니까?

▣ 직통계단은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합니다.

● ■ 공용건축물에 대해서 준공검사는 누가 실시하게 됩니까?

▣ 공용건축물을 발주한 기관에서 실시합니다.

● ■ 주거지역내에서 옥상에 조경부분은 얼마까지 인정 받을 수 있습니까?

▣ 지상 조경면적의 1/2까지만 법상 조경면적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

● ■ 단독주택인 기존건축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준공된 건축물을 증축(수평)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?

▣ 건축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하면 법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 부적합한 건축물은 10년간에 한하여 증축등을 할 수 있으나 기존건축물이 일조면 등에 저촉되면 수직증축은 물론 수평증축도 불가합니다.

● ■ 동일대지내에서 고저차가 있는 경우 2동이상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인동간격 산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?

▣ 대지내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 있어서는 고저차를 2등분한 선을 평균지표면으로 산정하여 건물의 높이를 산정한 후 높이에 따른 인동간격을 띄어서 건축하면 됩니다.

● ■ 1필지의 대지내에서 2동의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띄어야 할 건물거리는 얼마인지요. 일부에서는 3미터 또는 건물 높이 만큼 띄우면 된다하는데 어느 쪽이 정확한지요?

▣ 1필지내 2동의 단독주택은 건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거전용, 주거상업 지역에서는 건물 높이 만큼 기타지역에 있어서는 대지내의 통로인 3미터 이상만 확보하면 됩니다.

● ■ 5,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위에 3미터 통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3미터 통로 부분에 조경이 가능한지요?

▣ 대규모 건축물의 통로에 조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● ■ 건축법 시행령 별표5에서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에 보면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관광숙박시설이란 어떤것인가요?

▣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 이란 첫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200세대(서울시는 300) 이상의 기존주택이 없고 둘째, 건폐율은 40%이하 세째, 대지는 폭 12미터이상 도로에 12미터이상 접할것 등입니다. 기타 자세한 것은 82년도 10월에 공고된 건설부공고 제79호를 참작하시기 바랍니다.

□ 건축조례

● ■ 풍치지구 주거전용 지역의 경우 대지가 330 제곱미터인데 대지최소면적이 가능한지요?

▣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주거지역 이외의 풍치지구로서 대지주변에 기존 건축물이 있다던가, 또는

도로 등이 있어 대지의 추가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만 되어도 건축이 가능합니다.

● ■ 1종미관지구로서 대지면적이 102 평인데 건축이 가능한지요?

▣ 1종미관지구내 대지 최소면적은 600 제곱미터이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나 토지 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600제곱미터에 미달될 경우에는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이 가능합니다.

● ■ 미관지구내에서 건축자재상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?

▣ 서울시 건축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미관지구내 전재상설치는 불가능 합니다.

● ■ 미관지구내 도시계획의 결정으로 대지면적이 부적합한 경우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한 총수의 제한을 받는지요?

▣ 귀하의 경우에는 총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 다만, 3층이상의 경우는 건축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가능 합니다(주위의 미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).

● ■ 풍치지구내 132제곱미터인 대지내 건축이 가능합니까?

▣ 주거지역내에 설치된 풍치지구인 경우 서울시 건축조례 제50조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할 수 있습니다.

● ■ 미관지구내에서 도로의 양측 부분은 얼마씩 띄워야 합니까?

▣ 당해 지역지구의 대지 안의 공지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
● ■ 주거전용지역으로서 대지면적이 3,000제곱미터가 조금 못되는데 건축이 가능한지요?

(풍치지구일 경우)

▣ 풍치지구내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600 제곱미터입니다. 또한 주거지역에 풍치지구는 200제곱미터입니다. 다만, 주거지역 이외의 풍치지구로서 주변에 기존건축물이나 대지의 추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(도로등이 있을 경우)에는 20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건축이 가능합니다.

● ■ 주거 풍치지구내의 전폐율, 용적율, 높이 등은 얼마입니까?

▣ 전폐율은 30%이며 용적율은 83. 5. 4.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삭제되어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.

● ■ 제 4 종 미관지구내 용도변경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요?

▣ 미관심의는 필요없습니다.

● ■ 미관지구내 건축물 총수에 따라 건축면적 제한이 있습니까?

▣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6조제 3 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 예를들어 6층인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.

● ■ 풍치지구내의 용적율은 얼마입니까?

▣ 당해 지역 지구에 준하는 용적율 범위대로 계산하면 됩니다. 다만, 전폐율은 40%이내입니다.

● ■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 수종의 식재 기준을 알려 주

십시오.

▣ 조경면적 제곱미터당 관목이 0.5본, 교목이 0.3본 이상을 식재하여야 합니다.

● 문 서울 특별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종전에는 기준미달 대지에 대해서는 미관지구에 있어서 5층이하로 건축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 이 규정이 없어졌는데 5층이상으로도 건축이 가능합니까?

▣ 서울 특별시 건축조례 제16조제 3항에 맞게 (층의 수에 따른 건축면적 기준) 건축하여야 합니다.

● 문 풍치지구내에서 3층연립 주택 건축이 가능합니까?

▣ 제반 법규정에 맞는 경우 건축이 가능합니다.

● 문 준주거 지역내 대지로서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남은 대지가 39미터인데 건축이 가능합니까?

▣ 서울시 건축조례 제36조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로 인한 기준미달 대지는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지역 지구 최소대지 면적의 1/4이상일 경우에만 건축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.

● 문 풍치지구로서 자투리 대지면적 100제곱미터 입니다. 건축허가 가능한지요?

▣ 풍치지구라도 기준 대지면적의 1/4이상 45제곱미터 일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.

● 문 미관지구 후퇴부분도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합니까? ▣ 건폐율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.

● 문 서울시의 경우 강북지역의 용적률은 얼마입니까? ▣ 주거지역인 경우 250%입니다.

● 문 미관지구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1종인 경우 660제곱미터인 것이 600제곱미터로 바뀐시기는?

▣ 83. 5. 4. 조례 제1766호로 개정되었습니다.

● 문 제2종 미관지구내 대지 최소면적은 최소한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까?

▣ 대지최소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.

● 문 풍치지구이고 미관지구인 경우 건축선에서 건축물은 얼마를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합니까?

▣ 3.0미터이상 후퇴배치 하여야 합니다.

● 문 도시계획 시행으로 인하여 42제곱미터만 남은 주거지역내 대지인데 건축이 가능한지요?

▣ 귀하의 대지는 서울시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건축이 불가능 합니다.

□ 주차장법

● 문 재개발지구 내 주차장 설치에 있어 옥외주차 비율은 몇%이상 설치하여야 합니까?

▣ 재개발 지구 옥외주차 비율은 25%이상 확보하면 됩니다.

● 문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려는데 별도기준이 있는지요?

▣ 건설부령 제499조(80. 11. 17)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● 문 4미터 도로에 직각주차 배치를 하는 경우 도로에 붙여서 직각배치 할 수 있는지의 여부?

▣ 4미터 도로를 포함한 7.6미터 후퇴한 부분에서 직

각 주차 배치 할 수 있습니다.

● 문 주차장 대상 건물의 용도가 복합건물일 때 주차대수 산정 방법은?

▣ 용도가 복합일 때는 각 용도별로 산정된 주차대수의 합계대수를 확보해야 됩니다.

● 문 신청대지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인근에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?

▣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신청대지내 또는 건물내에만 설치하여야 합니다.

● 문 1층 피로티 밑 부분에 주차장을 하고자 합니다. 옥외주차장으로 잔주할 수 있습니까?

▣ 피로티 부분은 건축면적에 가산되므로 옥외 주차로 볼 수 없습니다.

● 문 1,000제곱미터의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습니까?

▣ 서울시 경우 대부분 주차장 정비지구로 주택 이외의 용도의 경우 150제곱미터이상이면 150제곱미터마다 1대씩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.

● 문 단독주택을 지을 때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까?

▣ 250제곱미터이상 당 1대의 주차장만 있습니다.

● 문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서 자동차의 주차시설을 위한 면적중 1개층이 주차장과 코아부분만 있다면 주차면적은 실주차부분만 해당되는지?

▣ 1개층에 주차장과 코아부분 이외에 거실이 없다면 1개층 전체가 주차시설을 위한 면적으로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.

● 문 옥탑부분이 건축면적의 1/8이상으로 충수에 산입되면 주차면적 산정시 포함되는지요?

▣ 옥탑부분이 계단실과 물탱크설치를 위한 구조물만 있다면 주차면적에서 제외됩니다.

● 문 기계식 주차장인 경우 여유공지는 어디에다 얼마만큼 확보해야 됩니까?

▣ 교통 진출입이 원활한 장소에 기계식 주차 20대 당 1대분 이상의 여유공지를 확보되어야 합니다.

● 문 주차장 면적 산출에 있어 기계실 옥탑 등의 면적도 주차면적에 산출됩니까?

▣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(주차를 위한 면적제외) 면적은 모두 주차장 면적산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

● 문 서울 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주차면적이 1,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출입구를 분리 설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주차면적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? (예로 여러층을 사용하는 경우)

▣ 각층 또는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의 차로가 각각 다른 도로 또는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각층 또는 지상면적만 가지고 산정하나 각층의 차로가 1개의 차로로 전출입하는 경우 각층 또는 지상까지 면적의 합계로 산출해야 합니다.

● 문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대지내 주차면적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?

▣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대지가 상업지역인 경우 200제곱미터마다 1대분, 기타 지역인 경우 250제곱미터마다 대문을 설치하면 됩니다.

- ▣ 주차장을 옥상에 설치코자 합니다. 옥외주차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?
답) 옥내주차로 인정됩니다.
- ▣ 기계식 3단주차는 가능합니까?
답) 아직 공인기관의 인준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불가능합니다.
- ▣ 주차장 경사로 설치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.
답) 주차장은 1/8이상의 경사각도로 설치해야 하며 회전되는 부분의 단경은 5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▣ 상업지역내에서 6미터미만 도로에는 주차장 설치가 불가합니까?
답) 예, 불가합니다.
- ▣ 기존건축물에 증축을 하려는데 주차장을 인근에 설치 가능한지요?
답) 동일대지내에 설치하여야 증축 가능합니다.
- ▣ 기계식 주차장으로 계획할 때 전면공지 규정에 대해 알려주십시오.
답) 전면공지는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차로의 폭은 최소 8.7미터 이상되어야 하며 방향전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외부반경이 6.1미터 이상되어야 합니다.
- ▣ 옥외에다 2단주차를 하는 경우 2단 주차 부분이 옥외주차 비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?
답) 건물 전면에 돌출되는 옥외 다단식 주차는 도시미관상 허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옥외주차로 볼 수 없습니다.
- ▣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시 전면공지는 최소한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?
답) 8.7미터이상 되어야 합니다.
- ▣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할 경우 여유주차를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요?
답) 기계식 주차 20대에 1대의 여유주차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.

□ 건축행정

- ▣ 전축허가를 득하여 공사중인 주택인데 공정이 50%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. 명의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?
답) 현행 규정상 공정이 30%이상이면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. 다만, 특별한 경우에는 공정에 관계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.
- ▣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만 표기하여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까?
답)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정한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▣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상 공지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요?
답) 건축법 제4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동 시행 규칙 제16조에 정한 용도 이외로 가설건축물은 허가처리되지 않습니다.
- ▣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유효합니까?
답) 1년간입니다.

- ▣ 건축허가에 필요한 전기도면은 어떤 것입니까?
답) 일반적으로 전기도면은 건축허가서에 첨부하지 않고 비상조명 장치와 전기설비 용량만 확인하고 있습니다.
- ▣ 공부상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증축 등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어느면적을 기준으로 법령등을 적용해야 합니까?
답) 실제면적으로 법령 등에 적합하게 하여야 합니다.
- ▣ 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려는데 허가없이 가능한지요?
답) 표준설계도로 건축하더라도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.
- ▣ 기존건축물의 담장 신설할 때 허가절차를 알려 주십시오.
답) 담장의 높이가 2미터 이하이면 동사무소에 신고로 하고 2미터 이상이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축조하여야 합니다.
- ▣ 시장용지 기존건축물(시장)에 증축아파트로 사용 가능합니까?
답) 공동주택내에 판매시설 설치가 불가함으로 공동주택으로 증축불가 합니다.
- ▣ 건축공사를 착공할 때 건축주가 착공계를 제출하는 시기는?
답) 공사 착공 후 7일이내에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▣ 단독주택을 매입하였는데 하자보증은 몇년간 합니까?
답)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만 하자보증기간이 있으며 개인간에 매매된 단독주택이라면 매도자와 약정이 없으면 하자보수는 매입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.

□ 기타규정

- ▣ 건축허가를 득하고 지하층을 파려하나 땅이 암반인 경우 꼭 지하층을 파야 되는지요?
답) 암반으로 되어 있는 지반의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가 1제곱미터 당 200톤 이상일 경우에는 지하층을 구축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▣ 주택을 짓고자 하는데 통신공사는 반드시 통신공사시공자가 설치해야 되는지요?
답)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시공자가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. 그 이하는 관계없습니다.
- ▣ 공원내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?
답) 공원안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이나 도시공원법에 의거 설치하는 공원시설, 그리고 공원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건축물만이 가능합니다.
- ▣ 연립주택 설계는 합동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는지요?
답) 종합건축사무소에서는 공동주택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.